

1. 개정이유

주택의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, 세대 안의 배기통에 설치하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저품질 제품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국기봉 꽂이 설치기준 마련(안 제5조)

난간의 재료 등이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 또는 왼쪽 벽면에 설치하도록 함

나.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마련(안 제11조제6호가목)

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국기봉 꽃이 설치)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기봉을 꽃을 수 있는 장치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 또는 왼쪽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6호가목 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며,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기설비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6호가목의 배기설비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 제11조(배기설비)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·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6.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.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 역류방지댐퍼(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)	제5조(국기봉 꽃이 설치) 영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기봉을 꽃을 수 있는 장치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앞쪽에서 건물을 바라보아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 또는 왼쪽 벽면에 설치하여야 한다. 제11조(배기설비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말하며,

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	<u>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</u> <u>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</u> <u>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</u> <u>품이어야 한다---</u>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